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황의순 외 1명 소유물건(2025타경22746)
의	뢰 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신호
감정평가서번호:		S2025-1001-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샛별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이 효 석

감정평가액	일억사천삼백만원정(₩143,000,000.-)			
의 뢰 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신호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부산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황의순 외 1명 (2025타경22746)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10.10	2025.10.10	2025.10.13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 여	143,000,000 백
	합 계					₩143,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소재하는 '성서초등학교'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6층 613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및 결정의 이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10월10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정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2025.10.10일자에 실지조사(공부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 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3. 그 밖의 사항

1) 본건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으로 분양 또는 매매관행상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를 일체로 하여 가격형성 되는바,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의 개별적인 평가가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의 가격배분내역을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동류형 물건,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 주민탐문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본건 내부구조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거래사례비교법)

2.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10]			
건물명,동,층,호수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6층 613호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일	2019.11.05
면 적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면적(㎡)	전용률(%)
	27.383	21.7041	4.28	-

3.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자료의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거래금액(전유면적당 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가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 센트럴시티5	9/902호	44.1671	245,000,000 (@5,547,115원/㎡)	2025.05.08 2019.11.05
나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 센트럴시티5	8/803호	53.0631	265,000,000 (@4,994,054원/㎡)	2023.03.21 2019.11.05
다	부산진구 범천동 847-2	서면스위트엠 골드에비뉴 102동	16/1604호	59.9754	312,000,000 (@5,202,132원/㎡)	2025.07.12 2022.05.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사례의 선정

최근 거래사례이며 본건과 동일한 단지 내 유사 부동산으로서 대상 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고, 대표성이 있는 <사례 가>를 선정함.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

5. 시점수정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 월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5.03 = 100.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100.4	100.3	100.0	99.7	99.5	99.2	99.0	98.8				

- 시점 수정치 산정

▶ <사례 가>의 매매 당시 가격지수 : 99.7 (2025.04)

▶ 본건 기준시점 당시 가격지수 : 98.8 (2025.08)

▶ 시점 수정치 : 98.8/99.7≒0.99097

거래시점 : 2025.05.08. 2025년04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5.10.10, 2025년09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 이전이므로 2025년08월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비교

구분		격차율		비고
조건	세항목	사례	대상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1.00	대등함.
	교통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1.00	대등함.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향별 효용	1.00	0.95	대상이 층별, 위치별 효용에서 열세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누계		1.00	0.950	1.00× 1.00× 0.95× 1.00

7. 대상 호의 비준가격

기호	거래단가 (전유면적 당)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비준단가	면적	비준가격
1	5,547,115	1.00	0.99097	0.950	5,222,173	27.383	142,998,77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참고가격 자료

1.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

본건 및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본건과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전유면적 당 @5,000,000원/㎡ ~ @5,500,000원/㎡ 수준임

2. 인근 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평가목적	감정평가액(단가/전유㎡)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ㄱ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 센트럴시티5	12/1209호	22.8892	법원경매	126,000,000 (5,504,587원/㎡)	2025.07.22 2019.11.05
ㄴ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 센트럴시티5	9/908호	22.408	법원경매	117,000,000 (5,220,884원/㎡)	2025.09.29 2019.11.05

Ⅴ.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 143,000,000 원

2. 결정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평가전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등)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관행 등을 참작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10	849-2 대동레미 안센트럴 시티5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0층 지2층 지1층 1층 2층 3층 4층 5층~20층	 782.81 944.105 598.39 778.09 778.09 619.625 각층 608.795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		1,252.6			
			공동주택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613호	27.383	27.383	143,000,000	비준가액
				1.소유권대지권	4.28 ------ 1,252.6	4.28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57,200,000 85,800,000	
	합 계						**₩143,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소재하는 성서초등학교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6층 613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0층 건물 내 6층 61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치장석 마감
창호; 새시 창호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 화재경보시설, 승강기, 공동현관기, 기계식 주차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약 18미터 내외, 동측으로 약 8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5-06-11)(기준높이 125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5-06-11)(최고높이 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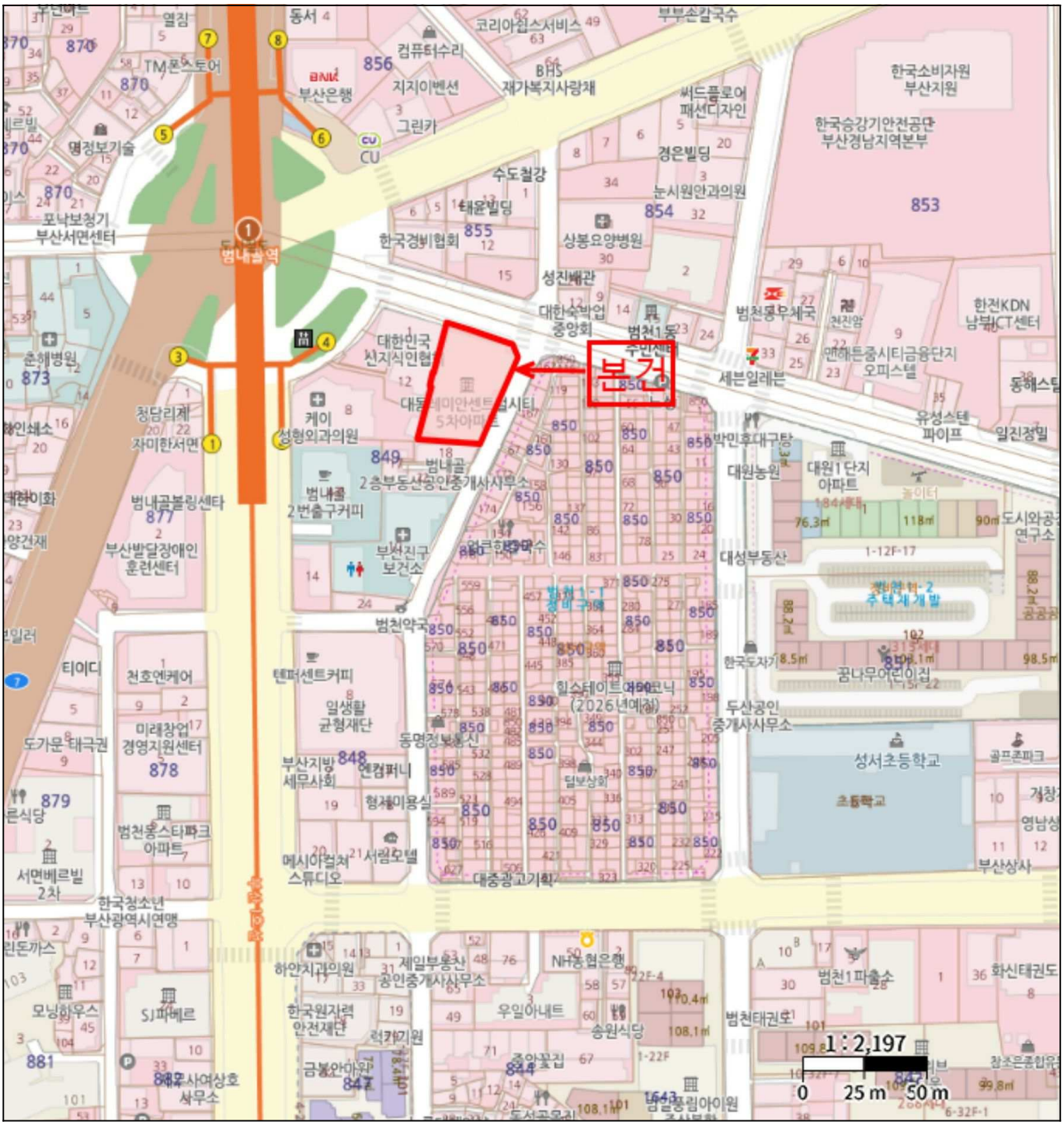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위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6층 613호



호 별 배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6층 613호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6층 호별배치도>

None Scale





